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이헌승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468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연금저축의 명칭을 세제지원연금으로 변경(이헌승의원안)	3

I. 개요

1. 이헌승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4468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이헌승의원 등 13인
- (2) 제 안 일 : 2024. 9. 30.
- (3) 회 부 일 : 2024. 10. 2.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금저축은 소득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 600만원 한도의 세액공제와 저율(3.3~5.5%)의 연금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임. 현재 보험 및 증권업체에서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라는 이름으로 상품을 출시하여 판매하고 있음.

하지만 ‘연금저축’이라는 이름 때문에 원금보장 및 이자발생에 세제 혜택까지 있는 저축상품으로 오해하여 가입한 경우가 많고, 상품 판매자가 제품의 특성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했을 시에 불완전판매의 가능성도 있음. 하지만 실제 판매되는 ‘연금저축펀드’는 원금보장이 되지 않고,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이기 때문에 원금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후 운용하며, 보험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에 따르므로 은행의 예적금보다도 수익률이 높지 않은 실정임.

이에 ‘연금저축’의 명칭을 ‘세제지원연금’으로 변경하여, 국민에게 안정

적인 노후자금을 마련을 위한 올바른 판단의 기준을 제공하고자 함(안 제20조의3 및 안 제59조의3).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연금저축의 명칭을 세제지원연금으로 변경(이헌승의원안)

현 행	개정안
□ 연금소득 및 연금계좌세액공제 (제20조의3 및 제59조의3) ○ 연금소득의 범위(제20조의3제1항) - 공적연금 - <u>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연금저축계좌</u> 또는 퇴직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하는 경우 그 연금 ○ 연금계좌세액공제(제59조의3제1항) - 공제율: ①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15% ②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12% -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연간): ① <u>연금저축계좌</u>: 600만원 ② <u>연금저축계좌</u>+퇴직연금계좌 합산: 900만원	□ 연금저축의 명칭을 세제지원연금으로 변경 ○ 연금소득의 범위(제20조의3제1항) - (현행과 같음) - <u>세제지원연금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세제지원연금계좌</u> 또는 퇴직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하는 경우 그 연금 ○ 연금계좌세액공제(제59조의3제1항) - 공제율: (현행과 같음) -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연간): ① <u>세제지원연금계좌</u>: 600만원 ② <u>세제지원연금계좌</u>+퇴직연금계좌 합산: 900만원

* 이헌승의원안 2024. 9. 30. 제출(의안번호 4468)

- 개정안은 ‘연금저축’의 명칭을 ‘세제지원연금’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 연금저축이란 일정 기간 납입 후 연금 형태로 인출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세제혜택 금융상품으로,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를 의미함.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 600만원까지 급여수준에 따라 12% 또는 15%의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연간 연금소득 수령액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 수령 시 3%~5%가 원천징수되고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1,500만원을 초과하는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6%~45%) 하거나 연금소득만을 별도로 분리과세(15%)하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저율 분리과세 특례를 제공하고 있음.

이처럼 현행법은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를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금저축계좌에 대하여 광범위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개정안은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연금저축’을 보다 직관적인 명칭인 ‘세제지원연금’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 특례 제도]

제도	내용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및 공제율>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세액 공제율
	5,500만원(4,500만원) 이하	연금저축계좌: 600만원 *퇴직연금계좌와 합산시 900만원	15%
	5,500만원(4,500만원) 초과		12%
저울 분리과세 특례	<연금수령 시 과세방법>		
	수령액	구분	세율
	1,200만원 이하	저울분리과세 (3~5%)	원천징수세율(3%~5%) *아래 표 참고
	1,200만원 초과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선택	종합과세(6%~45%) 또는 분리과세(15%)
	<사적연금 원천징수세율>		
	구분		원천징수세율
	① 연금소득자의 나이	70세 미만	5%
		70세 이상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
	② 사망할 때까지 연금수령하는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 * 사망일까지 연금수령하면서 중도 해지할 수 없는 계약		4%

□ 개정안은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인해 원금이 보장되고 이자가 발생하는 저축상품이라고 오해하여 가입하는 불상사를 방지하는 정책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연금저축상품의 종류로는 펀드와 보험이 있는데¹⁾, 연금저축펀드는 원금보장 대상이 아니고 「예금자보호법」상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²⁾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로 인한 손실 역시 가입자 본인에게 귀속됨.

반면,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원금보장 대상 상품이지만 공시이율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데, 2024년 10월 기준 손해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평균 공시이율은 1.73%로 은행 예금 금리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음.

개정안은 유사한 명칭의 다양한 금융상품이 존재하여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을 기준으로 가입여부를 판단할 경우 해당 상품의 특성

1) 연금저축신탁은 2018년부터 판매가 중지됨.

2) 「예금자보호법」

제31조(보험금 등의 지급) ① 공사는 부보금융회사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부보금융회사의 예금자등의 청구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종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제34조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결정이 있어야 한다.

제32조(보험금의 계산 등) ① 제31조에 따라 공사가 각 예금자등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금지급공고일 현재 각 예금자등의 예금등 채권의 합계액에서 각 예금자등이 해당 부보금융회사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보증채무는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은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보험금의 계산방법의 예외 등) ⑦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5천만원(이하 “보험금 지급한도”라 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 지급한도를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예금등 채권의 경우: 해당 목의 예금등 채권에 대하여 각각 보험금 지급한도를 적용한다. 다음의 예금등 채권을 합산한 예금등 채권

1)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예금등 채권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연금계좌 등) ①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란 제1호에 해당하는 계좌를 말하고,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란 제2호에 해당하는 계좌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신탁업자와 체결하는 신탁계약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하는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

다. 제25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을 취급하는 기관과 체결하는 보험계약

을 예측하기 어렵고, 실제로 연금저축에 가입할 경우 원금이 보장된다고 착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현행법상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을 세제지원연금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보험 간 비교]

구 분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취급주체	자산운용사	보험사
주요 판매사	증권사, 은행, 보험사	
납입방식	자유적립식	정기납입
적용금리	실적배당	공시이율
연금수령 방식	확정기간형	확정기간형, 종신형(생명보험만)
원금보장	비보장	보장
예금자보호	비보호	보호

* 자료: 금융감독원

□ 다만, 연금저축은 금융업계와 보험업계에서 오랜 기간 사용한 용어로서 법률상 용어만 개정할 경우 실무상 쓰이는 용어와 차이가 발생하여 연금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적용여부에 대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보임.

또한, 세제지원연금으로 명칭을 변경할 경우 상품의 특성이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새로운 상품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고,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해당 상품이 현행 연금저축과 동일하다고 설명하기 위해 불필요한 홍보비용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문 의 처

02)6788-5154
